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55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청년청장 김영경)

가. 제안이유

- 성동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위 치 · 규 모	성동구 옥수동 204-4 지상2층, 240㎡	
지 원 시 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 치 도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1.~2021.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시설 관리·운영 일체

① 청년역량 강화 사업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②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③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집적 및 안내
- 지역 특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지원 전문 인력 청년 매니저 양성
- 지역 기성자원(주민센터, 복지관)·청년단체 등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 등

④ 무중력지대 성동 시설 관리·운영

- 건축물 시설 관리·운영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⑤ 무중력지대 홍보 사업

- 무중력지대 성동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490백만원(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동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성동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무중력지대 성동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위 치 · 규 모	성동구 옥수동 204-4 지상2층, 240㎡
지 원 시 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 치 도	

- 본 동의안은 3년 동안(2020. 1. ~ 2022. 12.) 무중력지대 성동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 2020. 1. ~ 2022. 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 업 비 : 연간 490백만원(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위·수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역량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지역 특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지원 전문 인력 청년 매니저 양성
 - 지역 기성자원(주민센터, 복지관)·청년단체 등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 등
- **무중력지대 성동 시설 관리·운영**
 - 건축물 시설 관리·운영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 **무중력지대 홍보 사업**
 - 무중력지대 성동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나. 무중력지대 성동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 G밸리, 도봉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 및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이용대상과 운영시간* 등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교류공간은 365일, 24시간 개방체제로 운영하였으나,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이용자 저조 등으로 2018년 6월부터 운영시간을 변경함(평일 10시-10시).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주 이용 대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 용 시 간	당초 : 365일, 24시간 운영 ⇒ 변경 : 월~토 10:00~22:00 (2018년 6월부터)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일 : 10:00~22:00
주 요 공 간 시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 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 업 내 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성동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제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 1. 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9.7.19. 2019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결과 통보(적정)(자산관리과→청년청)
- 2019.8. 8.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수립
- 2019.8.13. 서울청년센터-무중력지대(가칭) 4개소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
- 2019.9. 6. 성동구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운영계획 수립
- 2019.9.~10. 조성 부지 경계·현황·측량 실시
- 2019.9.1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정”
- 2019.10.17. 성동구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2019.10.24.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토지 무상사용허가)

□ 향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상정 및 심의 : '19.11.
- 무중력지대 성동 설계용역 : '19.11~'20.1.
- 수탁기관 선정 : '20.1.
- 계약심사 의뢰 및 협약체결 : '20.1.~2.
- 무중력지대 성동 공사진행 : '20.2 ~ 5.
- 무중력지대 성동 개관·운영 : '20. 6.~

- 청년청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 성동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성동구 옥수동 332-1”에 무중력지대 성동을 조성하려는 건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 심의 이후 조성부지 변경(성동구 옥수동 204-4)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임.

구분	기존(옥수동 332-1)	변경(옥수동 204-4)
현장사진		
위치도		

- 둘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성동구 소유의 부지로 성동구의회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동 조성부지의 지목은 “구거”이며, 현 용도는 “공원”으로 되어 있음.
 - 「건축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목을 사전에 변경했어야 함에도 청년청은 “추후 대지로 지목 변경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의견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가 동의안 의결 이후 지목 변경 등이 지연 및 무산될 경우 동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등의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사전에 절차적 하자를 먼저 치유한 후 사업을 집행 하는 등 사업 집행 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2019년에 편성된 무중력지대 성동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7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만 5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률은 0.7%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19.10.22.기준)

연번	자치구	‘19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소계	시 설 비	감 리 비	자산 취득 비	사무 관리 비	소계	시 설 비	감 리 비	자산 취득 비	사무 관리 비	소계	시 설 비	감 리 비	자산 취득 비	사무 관리 비
1	성 동	734	623	11	100	10	5	-	-	-	5	729	623	11	100	5

- 이에 따라 무중력지대 성동의 2019년도 개관이 불가능하며, 다음연도에도 6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동의안을 제출 하고 있음.

- 넷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컨테이너로 제작되는 만큼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취약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추가적인 청년공간 조성시 청년 정주인구, 유동인구 및 유사시설 조성현황, 청년 수요 등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청년공간을 설치·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여섯째, 향후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며, 향후 국가의 사무도 일부 수행하려고 하는바 국비 확보 노력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곱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제출한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청년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무중력지대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책임감있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5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동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총 계	490,000천 원	
인건비(향후 인건비는 조정될 수 있음)	202,954천 원	
센터장	3,615천원*1명*12개월=43,380천원(수당포함)	‘19년 무중력시대 인건비 x 3%증액
매니저(상담 전담 2명 포함)	3,109천원*4명*12개월=149,232천원(수당포함)	
4대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산재보험)	10,342천원	
운영비	66,732천 원	
공공요금 및 세제	2,066천원*12개월 = 24,792천원	‘19년 무중력시대 운영비 x 3%증액
우편통신비	322천원*12개월 = 3,864천원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4천원*12개월 = 7,248천원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9천원*12개월 = 4,788천원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2천원*12개월 = 3,624천원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404천원*12개월 = 16,848천원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2천원*12개월 = 2,424천원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1천원*12개월 = 1,932천원	
여비(시내·외 출장)	101천원*12개월 = 1,212천원	
사업비	220,314천 원	
1) 종합상담지원체계 구축	45,600천 원	
ㄱ. 분야별 전문 상담 진행	100천원*30회*12개월 = 36,000천원	
ㄴ. 분야별 교육, 세미나 운영	200천원*4회*12개월 = 9,600천원	
2) 청년지원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30,000천 원	
ㄱ. 청년지원사업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ㄴ. 청년지원사업 정보 시스템 관리 및 홍보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3) 생활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51,000천원	
ㄱ. 청년 수당 참여자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250천원*1회*12개월 = 3,000천원	
ㄴ. 금융·부채 경감 관련 컨설팅(자문)	200천원*8회*12개월 = 19,200천원	
ㄷ. 청년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300천원*8회*12개월 = 28,800천원	
4) 지역·권역별 청년 특화 사업	42,000천원	
ㄱ. 지역 수요 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	1,000천원*2회 = 2,000천원	
ㄴ. 권역별/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4회(분기별) = 40,000천원	
5)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38,000천원	
ㄱ. 분야별 청년 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천원*4회*12개월 = 24,000천원	
ㄴ. 현장 견학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	2,000천원*4회(분기별) = 8,000천원	
ㄷ. 전문 자격 취득 지원	300천원*20명 = 6,000천원	
6) 지역 자원-단체 연계 체제 구축	13,714천원	
ㄱ. 청년 관련 지역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500천원*4회(분기별) = 2,000천원	
ㄴ.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설명회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ㄷ. 공공·민간 기관과 청년 단체 간 협약 체결	1,714천원*1회 = 1,714천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5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성동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 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위치·규모	성동구 옥수동 204-4 지상2층, 240m ²
지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치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시설 관리·운영 일체
 - ① 청년역량 강화 사업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②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 ③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집적 및 안내
 - 지역 특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지원 전문 인력 청년 매니저 양성
 - 지역 기성자원(주민센터, 복지관)·청년단체 등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 등
 - ④ 무중력지대 성동 시설 관리·운영
 - 건축물 시설 관리·운영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 ⑤ 무중력지대 홍보 사업
 - 무중력지대 성동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490백만원('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청 청년공간운영팀 김수정(☎ 2133-6585)